

제264회 임시회

2007. 10. 22(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고 일 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7년 10월 8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10월 10일

3. 제안이유

상위 관계법령의 폐지, 제·개정 등에 따라 관련 사무를 정비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실에 맞게 사무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행정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4.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07. 5.)에 따른 조문 정비

○ 사무위임 근거규정 변경(제1조)

- 「지방자치법」 제95조 → 제104조

나. 기업지원팀

○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지사의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단지 조성시 마다 산업단지별로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있는 것을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
 (다만, 도지사가 기 위탁한 일반산업단지와 도지사가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는 제외)

다. 자원관리팀

-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현실운영에 맞게 시장·군수에게 위임

※ 과태료 부과·징수(기준 : 유사석유 제품 사용량)

- 사용량이 1킬로리터 미만 : 50만원
- 1킬로리터 이상 5킬로리터 미만 : 2백50만원
- 5킬로리터 이상 10킬로리터 미만 : 5백만원
- 10킬로리터 이상 20킬로리터 미만 : 1천만원
- 20킬로리터 이상 30킬로리터 미만 : 1천5백만원
- 30킬로리터 이상 : 2천만원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 2분의 1 가중이나 감경 가능)

라. 지역개발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인 공원조성계획 결정” 중 “소공원 조성 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사무를 행정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

마. 산림녹지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보안림 지정·지정해제 및 고시” 및 “보안림 관리 등”에 관한 위임사무 정비

바. 환 경 과

-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05. 2. 10)되고, 「야생동물·식물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조수보호구역 설정, 조수보호원 임명, 조수 수입신고 등의 도지사 사무가 시장·군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함

5.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계법령의 폐지 또는 제·개정내용에 따라 관련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행정 권한과 책임의 일치,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됨.

다만, 각각의 사무를 위임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위임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위임사무별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붙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